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6. 6. 14.>

사업시행자의 명칭

수신자
(경유)
제 목 **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**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.

사업시행자	성명 또는 명칭	
	주소	
공익사업의 명칭		
가격시점		
평가서 제출기한		
평가 의뢰 물건 (토지 및 물건의 명세)		
평가조건 및 참고사항		

사 업 시 행 자 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(서명 또는 인) 검토자 직위(직급) (서명 또는 인) 결재권자 직위(직급) (서명 또는 인)

협조자

시행 처리기관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편번호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 팩스번호( ) / 전자우편주소 /

작성방법

1. "평가 의뢰 물건(토지 및 물건의 명세)"란에는 아래 사항을 적습니다.
   가. 토지의 명세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이용상황, 면적 및 토지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   나. 물건의 명세에는 물건의 소재지, 지번, 물건의 종류, 구조·규격, 수량·면적, 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   다. 대상물건이 건축물 등 물건인 경우에는 이전 또는 취득, 영업인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구분하여 물건의 명세에 적습니다.
2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1항제7호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"평가조건 및 참고사항"란에 평가조건 등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